



정책방향

부실공사 예방대책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80년대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건설업은 이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상회함으로써 제조업, 금융업 다음가는 세번째 규모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적당주의」와 최근 3D업종 기피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건설공사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부실공사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수립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에 따라 그간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하여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한 데 이어 금년에는 「성실시공원년」과 「부실공사추방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조사설계, 감리/감독, 시공 등 건설과정의 전단계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부실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부실공사 예방대책」 방안을 수립,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본고는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2단계 조치로 추진할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부실벌점제도 도입

■조사·설계부문

용역설계 참여기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최종보고서에 모든 참여기술자 및 업무수행사항 등을 기록·비치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

(1)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용, 소지자격종류 및 번호 등을 기록

(2) 용역업체는 용역설계 착공계 제출시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기록

㉠ 과업수행 기간 및 준공검사이시 확인

㉡ 참여기술자의 변동 등이 있을시도 동일 조치

(3) 용역설계 발주기관은 필히 보고서를 한국건설인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만 기술자의 경력을 인정, 개별 경력서에 기록·보존(시행중이거나 신규용역 모두 조치 요망)

부실설계업체(부실설계:전체 40.9%)에 경각심을 주어 설계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설계를 한 용역업체 및 설계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용역입찰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1) 현장점검 및 각 발주기관의 조사 확인 결과에 따라 부실설계 내용을 Data Base화

(2)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여

(3) 3억원 이하:일정 벌점 이상일 경우 입찰자격 제한

(4) 3~5억원:사전입찰자격(P.Q) 평가시 감점

(5) 5억원 이상:기술제안서(P.P) 평가시 감점

용역설계비가 현행 요율보다 적은 수준이고 용역기간도 불충분하여 설계부실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조치하도록 EPB, 내무부 및 관계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발주기관에서도 설계용역비를 현행 기준에 부합토록 협조 요망.

(1) 설계비용을 현기준 요율대로 편성, 지급

(2) 토질 등 기초조사비는 조사량에 맞추어 지불

(3) 조사설계 완료후 민·관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해소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간과 현지 조사기간을 충분히 부여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설계시 사전에 현지를 충분히 답사하여 설계구간(연장), 토질 등 기초조사개소 및 수량 등을 정확히 산정한 후 예산요구함으로써 실제 용역설계시 예산 부족이 없도록 협조 요망

■감독·감리부문

현장감독관/감리자의 철저한 현장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감독관 근무상황부(관)를 비치, 운영 요망

(1) 감리자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외출, 조퇴 등 근무상황 등을 기록, 비치

(2) 근무상황관을 감독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하고 당일 현장 근무위치와 업무내용 등을 기록

(3) 감리자가 현장 이탈시는 필히 발주기관(또는 업무담당관)에 그 사유 등을 보고해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

(4) 감리자가 현장 무단이탈 또는 결근시는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등이 즉시 발주기관(또는 업무담당관)에 보고

감리자의 수행업무를 한개 또는 수개 현장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업무담당관이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비치

감리자는 시공전 설계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행전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를 의무화.

부실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용역입찰시 불이익처분

(1) 부실시공관련 및 부실예방대책 불이행 등 부실감리 내용을 DATA BASE화

(2) 부실내용에 따른 벌점을 부여

(3) 3억원 이하의 감리용역에 대한 일반공개경쟁시 입찰참여 제한

(4) 3억원 이상의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감점평가
* 벌점기준은 별도 수립중

감리자의 자질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감리교육제도 강화 및 의무화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를 구분 실시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반으로 구분교육

(3) 직무(기술, 행정) 교육강화 및 특별정신 교육강화

(4) 시험담당 감리자에 대한 시험교육

■시공부문

건설부는 부실설계업체에 경각심을 주어 설계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설계를 한 용역업체 및 설계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용역입찰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감리자는 시공전 설계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사현장마다 공중,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 수립, 이를 집중관리한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조치

(1) 레미콘, 아스콘 등의 품질 확보계획 수립(공동사항)

(2) 각 현장별 부실발생 취약요소를 도출, 예방대책을 수립

※ 감리/감독관, 업무담당관, 업체 합동으로 수립

공사사수전 시공업체가 부실설계요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설계 잘못으로 인한 공사부실을 예방하고 발주기관은 시공 및 감리업체의 검토 결과를 설계용역업체에 확인시킨 후 시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조치

시공업체가 현장중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도록 의무화

[예시]

(1) 특수 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 길이 및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압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을 명확히 하여 시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상세 도면 등

현장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

(1)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 근무 철저

(2) 안전관리 담당감리자 지정

(3)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이행

㉠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 특별(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 년 1회 이상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 계획(100억원 이상)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

감리자의 시공업체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며 감리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모든 건설업체가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토록 적극 권장

현장중사 회사직원(원청자, 하도급자를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

(1) 매일 작업시작 전 특별교육 실시

㉠ 전일 작업분석·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 등

모든 건설업체가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 각 공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 계획서(TQC: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

장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획득의 필수 사항

■의식개혁/기타부문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건설공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부실공사방지 전담부서 및 부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관공사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

(1) 자체 부실공사 종합대책 수립 시행

(2) 부실공사예방대책 등을 전파 및 이행

(3) 부실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부실 및 처벌내용과 벌점 등을 건설부에 통보(건설부에서 자료를 집계하여 부실벌점제에 적용)

(4) 현장점검시는 안전관리 및 감리자의 감독업무 이행실태 등을 동시 철저히 확인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기능공의 책임 및 건설시공의식이 부실공사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망

(1) 매월 이틀을 교육일자로 지정, 2개조로 나누어 교육

(2) 교육평가를 실시 저득점자 집중관리 또는 교체

공사 준공검사 이전(약 2개월)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비준공검사를 필히 실시토록 조치

(1) 예비 준공검사원 임명부 필히 비치

(2) 지적사항은 준공검사시 필히 확인

(3) 허용기준치 내이나 부족시공분은 감액 조치

(4) 공사기간내에 예비 준공검사 기간 및 지적사항 조치기간을 필히 포함

업체 독자적으로 수급공사의 시공상태를 수시점검 및 기술 지도할 수 있는 부실공사 점검전담부서 설치, 운영토록 각 발주기관에서는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 책임시공의식 제고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성실시공 안내간판 및 교량 등 주요구조물 현장에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조치

건설공사 설계서의 특별시방서 작성 철저

(1) 필요성

㉠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 발주시 계약문서로 사용할 중요한 내용임

㉡ 일부 실시설계용역시 작성된 시방서의 경우 종합보고서 상에는 공사시행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설계도서나 시방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계약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작성 필요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혼동하여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일반·특별시방서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시공시 혼란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함

㉣ 특별시방서는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건설시장개방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작성

(2) 세부작성요령

㉤ 특별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임.

㉥ 신공법 적용시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현장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근무 철저, 안전관리 담당감리자 지정,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이행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4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기능공의 책임 및 건설시공 의식이 부실공사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방청 등 각 발주기관에서 현장 시험사 및 감리자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매월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항
㉞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㉟ 현장 품질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㊱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협조사항 및 참고사항

건설부는 부실공사예방대책중에서 현재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법령 또는 지침 등에 모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 개정중에 있다고 밝히고, 지난 5월 부실전담부서/부실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실전담부서/신고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 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기관은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미한 부실사항도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또한 금년도부터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실지적사항을 DATA BASE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가능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처 및 시·도 등의 발주기관도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책임감리 도입시기가 일천하여 감리자 직무수행능력부족과 감리자·시공자간의 역할분담 등 제도 정착 초기단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감리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감리수행지침서」와

「감리대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책임감리의 내실화를 통한 건설시공 풍토 조성은 건설업계의 당면과제이므로 책임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부는 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리수행지침서 개선사항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적극 건설부에 개진하여 주고, 정기적으로 감리자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질적수준을 제고시키는 한편 감리자가 공의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심하여 건설시공의 풍토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리업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부실감리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와 감리자가 엄격히 제재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부실용역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용역설계를 부실하게 한 업체 및 참여기술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설계용역결과가 우수하거나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반영할 수 있는 「설계용역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능공 양성교육시 건설부 간부 등이 실사례 중심의 강의를 하도록 노동부와 협의하였고, 기능공 교육직종도 대폭 늘려주도록 협의중에 있다.